

신기술(NT) · 우수품질(EM) ·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 안내

박재훈 _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

신기술인증(NT)



Korea New Technology

□ 신기술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하여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 마크를 부여하고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관련 법령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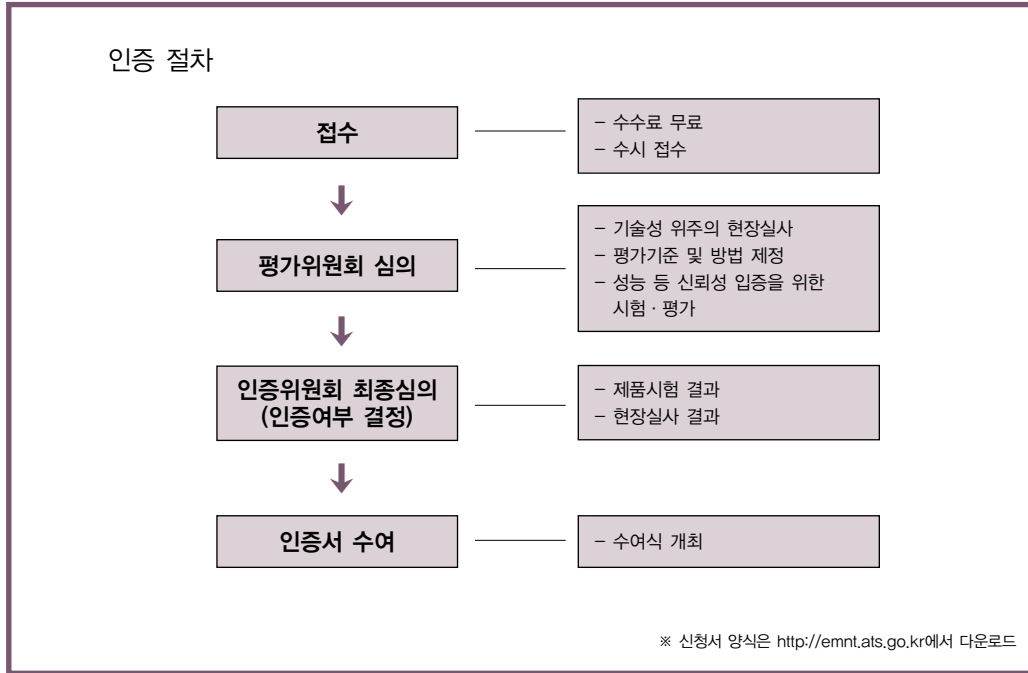
□ 인증 대상(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로서 실용화한 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 또는 상품화한 지 3년 이내의 제품
- 단, 개념적 기술, 당해 기업 생산라인에만 사용되는 범용성 없는 제조기술, 이미 보편화된 기술, 식품, 의약품 및 전문 의료기기, 건설 시공기술,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자동차 등의 완성품(다만, 부품은 해당)에 관련된 기술은 제외한다.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평가 절차 및 과정



우수품질인증(EM)



Excellent Machine, Mechanism, Materials

□ 우수품질인증이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라 한다)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시험·분석·평가하여 국외 제품 및 동종 제품 대비 탁월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관련 법령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인증 대상(자격)

-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되어 실용화(상품화)된 자본재로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부품·소재와 동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계류
- 단,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대상 품목 및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평가 절차 및 과정

NT 인증 과정과 유사

환경설비 품질인증(EEC)



Environmental Equipment Certification

□ 환경설비 품질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소화·개량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환경설비에 대하여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홍보, 판로 개척,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인증 대상(자격)

- 국내의 설계·제조기술에 의해 핵심기술을 개발·개선한 환경설비(파일럿 플랜트 포함)
- 단, 신청일 당시 5년 이전에 개발된 설비, 국내의 설계 능력 없이 외국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에 의해 단순 제조된 설비는 제외한다.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평가 절차 및 과정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NT 인증 과정과 유사하다.

정부 지원 시책

□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20% 이상 의무구매 제도화

2005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EEC 인증 제외)

□ 우선구매 지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인증일로부터 2년간)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 시 우대(EEC 인증 제외)

□ 기술우대보증

기술신용·기술평가 보증 시 절차 간소화 및 보증한도 우대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규정

□ 하자보증 등 보증 종류 확대

인증제품에 대한 보증 종류 확대 적용

-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 지급보증

- 일반보증기관의 1/3 수수료

※ 취급기관 : 기계공제조합

□ 산업재산권 우선심사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대상

- 인증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만 해당

□ 판로 개척 및 홍보 등

- 국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시장 개척

- 카탈로그 제작 배포

※ 배포처 : 해외 KOTRA 무역관 및 조달청

- 기술개발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 부여)

- 개발유공자 및 기업 정부 포상 ㉠

※ 기타 인증제도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emnt.ats.go.kr>)를 참고하거나 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M·EEC 인증 분야 : 자본재표준과 : ☎ 02-509-7281~5

NT 인증 분야 : 에너지자원표준과 : ☎ 02-509-7277~7280